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2월 28일

회 사 명 : (주) 광주신세계
대 표 이 사 : 최 민도
본 점 소 재 지 :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32(광천동)
(전 화)062 - 360 -1061
(홈페이지)<http://gjshinsega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담당 (성 명)최 재 휘
(전 화)062 - 360 - 123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하여 제 2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무진대로 932 광주신세계 아카데미 다목적홀
3. 보고사항 :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제 24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정식)
 - 제 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형균)
 - 제 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위길환)
 - 제 2-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한장희)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김형균)
 - 제 3-2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위길환)
 - 제 3-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한장희)
 -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19년 3월 9일 ~ 2019년 3월 18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 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형균 (출석률: 100%)	윤판 (출석률: 100%)	이용연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	2018.01.18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	2018.01.31	2017 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17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참석	참석	참석
		2017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보고	참석	참석	참석
3	2018.02.22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보고	참석	참석	참석
		2018년 1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4	2018.03.15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사외이사후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내부회계관리 조직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대규모 내부 거래 2018년 2분기 예상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18년 2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5	2018.05.25	2018년도 당좌 대출계약 연장 승인 건	찬성	찬성	찬성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18년 4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6	2018.06.27	대규모 내부 거래 2018년 3분기 예상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18년 5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7	2018.07.18	임원 상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8	2018.09.12	대규모 내부 거래 2018년 4분기 예상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18년 8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9	2018.11.13	광주신세계 이마트 사업 부문 양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이마트와 매장 임대차 계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18년 10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김형균	2018.01.31	- 2017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보고	가결
	사외이사 윤판 사외이사 이용연	2018.02.22	- 제23기 사업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 보고서 승인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3	1,500,000,000	130,387,000	43,462,233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경영수수료	(주)신세계 (계열회사)	2018.01~2018.12	64	3.1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신세계 (계열회사)	상품매입 및 지급수수료 등	2018.01~2018.12	139	6.6
	상품권 수수료 수입 등	2018.01~2018.12	13	0.6
	소계		152	7.2
(주)이마트 (계열회사)	상품매입 및 지급수수료 등	2018.01~2018.12	298	14.2
	상품매출 등	2018.01~2018.12	6	0.3
	소계		304	14.5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백화점 부문]

(1) 산업의 특성

커다란 자금력과 영업력을 겸비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인 백화점은 고품격의 매장 인테리어, 최첨단 편의시설, 소비재에서 고급의류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산업으로서 다른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련된 판매시설을 통하여 첨단 유행을 선도하고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유통산업입니다.

이러한 백화점은 지난 60년대 경제발전기부터 한국 유통산업의 중심에서 낙후된 유통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시장 재편과 아울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로 업체간 가격 경쟁, 입지 경쟁, 서비스 경쟁 등 전반적 경쟁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백화점 업계는 대형마트 등의 출점 가속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로 지방 백화점을 시작으로 중·소형백화점의 시장이탈과 더불어 대형백화점위주의 시장재편을 거치면서 수년간 저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 아울렛 등의 신업체의 등장으로 업체간의 경쟁이 보다 가속화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유통 채널의 확대 및 복합쇼핑몰 등의 新 백화점 모델 등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규모로 성장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백화점 업계는 29.9조의 매출로 전년 대비 2.3%대의 신장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백화점 매출현황(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매출액(조원)	29.9	29.2	29.9	28.9	29.1
신장율(%)	2.3	△2.1	3.3	△0.6	△2.4

- 자료출처 : 통계청, 「17개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은 생활 내구재로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중 주력상품은 단연 의류 및 잡화를 중심으로 하는 패션상품입니다.

따라서 여타의 유통업태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유통업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명절, 기념일 등의 GIFT 시즌이 포함된 봄, 가을, 겨울의 판매액이 여름철의 판매액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4) 경쟁요소

현재의 유통산업은 전업태간 동질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산업의 특성상 고도의 자금력과 영업력을 겸비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으로 신규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이업태의 출현은 대형 백화점을 위주로 하는 시장 재편으로 중·소형 백화점의 시장이탈 및 M&A 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화점은 시설 및 상품 고급화, 고품격 서비스력 쇄신, 보다 세분화된 CRM 활동, 첨단 과학적 마케팅 기법의 도입, 매장 인테리어 고급화 및 편익시설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잡화 등 백화점의 주력 상품인 패션류는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회복 국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01년 7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전면 금지

- 주차장법:

지자체장은 신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

- 재래시장 특별법:

지자체장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 시장과의 협력 요청가능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건축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유발비용 원인자(개발자)에게 부과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 등이 음·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전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000m²이상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 건축 제한

-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공정화, 분쟁조정, 사건처리절차, 벌칙 등을 지정

-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기반 유통업체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를 꺾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정

[대형마트 부문]

(1) 산업의 특성

대형 마트는 상품의 대량 구매·대량 진열, 상품의 저마진 고회전, 셀프 서비스의 특성을 지닌 유통 형태로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실속구매를 지향하는 소비 패턴과 대형 마트의 지속적인 출점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형 마트는 다품목으로 농수산물에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량 구매로 매입단가를 낮춤으로써,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합리적 소비를 도모, 상품력이 뛰어난 지방 중소제조업체와 지방특산물을 발굴하여 전국적인 유통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993년 국내에 대형 마트가 최초로 선을 보이기 시작하여 저가 정책과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정착화 되면서 대형 마트는 꾸준한 성장을 하며 2003년 할인점이 백화점 매출을 추월하여 국내 최대의 소매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유통산업 발전법 관련 의무 휴업일 지정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인터넷,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및 업체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대형마트 매출액은 약 33.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역성장하였고(면세점 제외, 아울렛 등 포함),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HMR 상품 강화, 온라인 판매, 전문점 및 복합쇼핑몰 개발 등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매출현황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매출액(조원)	33.4	56.4	52.9	48.6	47.5
신장율(%)	△1.0	6.5	8.9	2.4	3.4

- 자료출처 : 통계청, 「17개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 2018년 2월 통계청 기준지수 개편으로 대형마트 시장규모 내에 면세점 매출액이 제외되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 마트의 상품 구성은 농수산물, 공산품 등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다른 소매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문화로 경기 탄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여름휴가 및 추석 등이 있는 3분기의 매출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4) 경쟁요소

대형 마트의 중요한 경쟁 요소는 출점 입지의 선점 및 다점포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가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그러나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 구조에서는 위의 두 가지 경쟁 요소와 함께 더불어 엔터테인먼트(오락)를 즐길 수 있는 고객 편의 시설 및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 등의 고객의 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비가격적 부분이 주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입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백화점 부문과 동일의 추가 규제

- 유통산업 발전법: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Delta 0.2\%$ 감소한 2,092억원, 총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4,62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Delta 7.9\%$ 감소한 51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백화점 부문]

백화점 부문 2018년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1,352억원,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3,74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8% 감소한 50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부문]

E-Mart 부문 2018년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740억원, 총매출액은 △3.1% 감소한 881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1.1% 감소한 1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광주지역에는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타 대형마트 20여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상장법인으로서 실적 공시를 통해 당사의 재무현황 및 영업실적을 매 기간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만,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경쟁백화점과 타 대형마트는 비상장회사 또는 상장회사의 지점으로 그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부재합니다. 이에 시장점유율은 부득이하게 통계청에서 제시된 광주광역시 백화점 판매액과 대형마트 판매액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부문]

백화점 부문은 광주지역에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장세를 이어오다 2015년에 점유율이 하락한 이후 다시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광주신세계	44.5%	44.7%	41.3%	40.3%	41.5%
기타	55.5%	55.3%	58.7%	59.7%	58.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통계청 (당사 총매출액 ÷ 광주광역시 총매출액)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서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부문]

이마트 등 기타 대형마트 20여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동업계간의 경쟁심화 등의로 인해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2017년부터 점유율이 다시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광주신세계 E-Mart	11.8	8.2%	7.6%	7.7%	8.6%
기 타	88.2	91.8%	92.4%	92.3%	91.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통계청 (당사 총매출액 ÷ 광주광역시 총매출액)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제1018호 '수익', 기업 회계기준서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유통업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의 선점을 통한 고객 접근성 확보에 있는 바 최근 대단위 택지개발로 광산구 지역의 신흥 주거단지 확대, 송원대학 부지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당사 상권 내 유입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터미널 유스퀘어에 문화시설 및 영화관이 신규로 들어서면서 집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2007년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출점시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심의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예견됩니다.

[백화점 부문]

광주지역 도·소매 유통시장은 대형 백화점 (신세계, 롯데, NC)을 중심으로 아울렛 등의 이 업체와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지속된 소득의 양극화로 백화점은 고급품, 패션 장르를 강화, 다양한 문화 마케팅 전략, 고객의 고객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마케팅의 강화 및 집중을 통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 계층을 확보하는데 힘쓰는 한편, 격조 높은 매장 분위기 연출을 통해 고품격 백화점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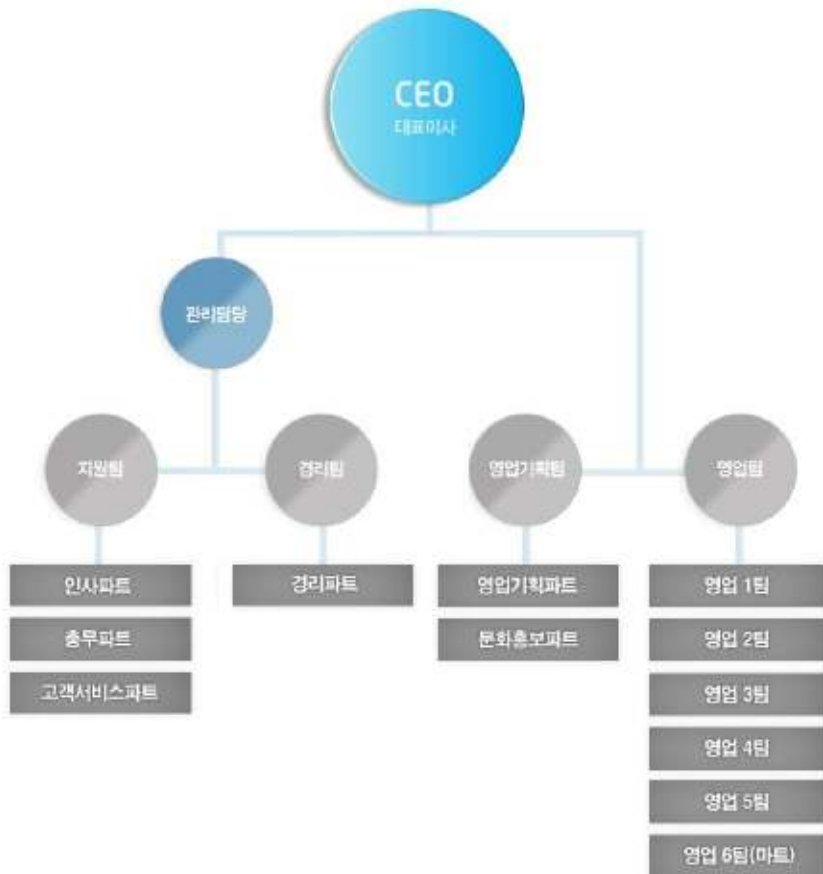
[대형마트 부문]

대형마트는 현재 이마트 5개, 롯데마트 4개, 홈플러스 3개 점포와 지방 대형마트가 다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대형 마트는 신흥 택지개발, 대단위 아파트 주거 단지 위주로 각 점포가 진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형 마트 간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집객 효과는 감소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 구색과 서비스의 차별화 등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현금흐름표

※ 제 24(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4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3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24(당) 기말	제23(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77,080,261,496	33,243,824,732
현금및현금성자산	46,940,170,863	1,330,314,453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3,645,810,594	11,181,665,441
재고자산	5,609,950,461	5,384,422,846
기타금융자산	-	4,500,000,000
기타유동자산	10,884,329,578	10,847,421,992
비유동자산	619,124,720,182	621,775,146,142
장기금융예치금	10,000,000	10,000,000
유형자산	108,278,411,431	108,947,528,385

과 목	제24(당) 기말	제23(전) 기말
무형자산	1,128,915,678	1,248,680,885
기타비유동채권	361,659,275,760	352,327,087,253
이연법인세자산	3,247,046,003	2,630,452,927
기타비유동자산	144,801,071,310	155,587,273,557
확정급여자산	-	1,024,123,135
자산총계	696,204,981,678	655,018,970,874
부채		
유동부채	74,569,133,011	74,984,335,035
단기차입금	-	5,600,000,000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30,401,470,014	25,973,454,990
당기법인세부채	10,395,683,614	11,339,686,525
기타유동부채	33,771,979,383	32,071,193,520
비유동부채	979,132,272	670,803,652
기타비유동채무	979,132,272	670,803,652
부채총계	75,548,265,283	75,655,138,687
자본		
자본금	8,000,000,000	8,000,000,000
기타자본	13,375,628,000	13,375,628,000
이익잉여금	599,281,088,395	557,988,204,187
자본총계	620,656,716,395	579,363,832,187
자본과부채총계	696,204,981,678	655,018,970,874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24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23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I.매출액	209,181,701,983	209,647,360,453
II.매출원가	70,361,327,741	68,619,341,483
III.매출총이익	138,820,374,242	141,028,018,970
판매비와관리비	86,951,279,000	84,738,271,326
IV.영업이익	51,869,095,242	56,289,747,644
기타수익	71,869,424	130,433,348
기타비용	642,947,001	512,977,668
금융수익	9,602,189,701	9,214,768,611
금융원가	69,930,082	648,024,459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0,830,277,284	64,473,947,476
VI.법인세비용	15,737,096,913	16,627,756,052
VII.당기순이익	45,093,180,371	47,846,191,424
VIII.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303,856,454	772,545,475
후속기간에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303,856,454	772,545,475
IX.총포괄이익	43,789,323,917	47,073,645,949
X.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28,183	29,90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4 기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23 기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3,469,362,428	47,176,478,22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76,478,220	102,832,271
2.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496,439,709)	-
3.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303,856,454)	(772,545,475)
4. 당기순이익	45,093,180,371	47,846,191,424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3,300,000,000	47,000,000,000
1. 사업확장적립금	38,500,000,000	45,000,000,000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2. 배당금	4,800,000,000		2,000,000,000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 3,000원(60%) 전기 : 1,250원(25%)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69,362,428	-	176,478,220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4 기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23 기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자본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7년 1월 1일(전기초)	8,000,000,000	13,375,628,000	512,914,558,238	534,290,186,23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47,846,191,424	47,846,191,424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772,545,475)	(772,545,475)
총포괄손익	-	-	47,073,645,949	47,073,645,94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2,000,000,000)	(2,000,000,000)
2017년 12월 31일(전기말)	8,000,000,000	13,375,628,000	557,988,204,187	579,363,832,187
2018년 1월 1일(당기초)	8,000,000,000	13,375,628,000	557,988,204,187	579,363,832,187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496,439,709)	(496,439,709)
수정 후 재작성된 금액			557,491,764,478	578,867,392,47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45,093,180,371	45,093,180,371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1,303,856,454)	(1,303,856,454)
총포괄손익	-	-	43,789,323,917	43,789,323,91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2,000,000,000)	(2,000,000,000)
2018년 12월 31일(당기말)	8,000,000,000	13,375,628,000	599,281,088,395	620,656,716,395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4 기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23 기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868,560,327		51,294,765,713
(1) 당기순이익	45,093,180,371		47,846,191,424	
(2)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25,915,014,214		20,687,036,159	
퇴직급여	1,069,580,114		1,009,112,638	
감가상각비	5,656,852,804		5,286,086,254	
무형자산상각비	332,745,744		318,986,083	
임차료	10,786,202,247		10,786,202,247	
유형자산처분손실	-		12,072,614	
매출채권손상차손	8,456,956		9,747,731	
이자비용	69,930,082		648,024,459	
법인세비용	15,737,096,913		16,627,756,052	
이자수익	(9,602,189,701)		(9,214,768,611)	
유형자산처분이익	-		(11,839,36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845,695,592)		(974,773,103)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1,626,906,517)		(748,775,975)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36,907,586)		68,557,841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225,527,615)		74,048,791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319,951,327)		186,430,941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4,747,966,351		(303,266,558)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204,346,154		(403,031,464)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감소)	256,502,367		12,395,079	
퇴직금의 지급	(1,817,361,420)		(1,562,803,950)	
관계사전입액	1,002,244,390		821,695,530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482,370,150)		(1,954,821,080)	
(3) 이자의 수령	227,988,724		84,349,815	
(4) 이자의 지급	(69,930,082)		(648,024,459)	
(5) 법인세의 납부	(17,297,692,900)		(16,674,787,22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58,703,917)		(3,587,725,918)
보증금의 감소	42,012,470		-	
유형자산의 처분	-		57,052,000	
보증금의 증가	-		(140,303,230)	
유형자산의 취득	(5,174,014,309)		(3,470,364,071)	
무형자산의 취득	(26,702,078)		(34,110,617)	
선급금의 증가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00,000,000)		(47,300,000,000)
단기대여금의 회수	4,5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788,300,000,000		3,198,2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793,900,000,000)		(3,243,500,000,000)	
유동성사채의 상환	-		-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배당금 지급	(2,000,000,000)		(2,00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감소(비배)		45,609,856,410		407,039,795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330,314,453		923,274,658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6,940,170,863		1,330,314,453

- 주식

제 24(당)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3(전)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당사"라 함)는 1995년 4월 10일자로 설립되어, 백화점 및 대형 마트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당사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 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80억원입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7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 말 현재 주요 주주는 정용진(지분율 52.1%)과 주식회사 신세계(지분율 10.4%)입니다.

당사는 2006년 3월 3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7월 4일자로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

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이며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6: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

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 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초 적용되는 기준서의 주요 영향입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당사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

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 수정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객충성제도 회계처리

당사는 VIP로 선정된 고객의 상품구매 시 초과할인권을 부여하여 향후 구매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합니다. 동 초과할인권은 일반 고객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할인 혜택입니다. 따라서 VIP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와 초과할인권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초과할인권의 개별판매가격은 당사의 과거 경험에 따라 VIP고객이 상품구매 시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상품구매 시점에 초과할인권과 관련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초과할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상품구매를 할 때 인식합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할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당사의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하여 계약부채 설정으로 인해 당기초 계약부채가 65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구 분	공시금액	조 정	제1115호 반영전
매출	209,181,702	(3,970,579)	205,211,123
매출원가	(70,361,328)	-	(70,361,328)
매출총이익	138,820,374	(3,970,579)	134,849,795
판매비와관리비	(86,951,279)	3,870,542	(83,080,737)
영업이익	51,869,095	-	51,869,095
영업외손익	8,961,182	-	8,961,1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0,830,277	-	60,830,277
법인세비용	(14,130,116)	-	(14,130,116)
당기순이익	46,700,161	-	46,700,161

총포괄이익	45,396,305	-	45,396,305
-------	------------	---	------------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01월 01일		
	변경전	조정사항	변경후
유동자산	33,243,825	-	33,243,825
비유동자산	621,775,146	158,494	621,933,640
자산계	655,018,971	-	655,177,465
유동부채	74,984,335	654,934	75,639,269
비유동부채	670,804	-	670,804
부채계	75,655,139	654,934	76,310,072
자본계	579,363,832	(496,440)	578,867,392

한편, 상기 회계정책의 변경이 최초적용일 현재 자본의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이익잉여금
2017년 12월 31일(보고금액)	557,988,204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최초적용	
고객충성제도	(654,934)
도입영향에 따른 법인세 효과	158,494
소계	(496,440)
2018년 1월 1일(최초적용일)	557,491,764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일부 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성격과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기존 요건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존 분류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은 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당사의 회계정책에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 분류와 측정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범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당사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이 아니라면, 최초의 공정가치에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나)참조)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른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

회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이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만 관련됩니다.

다음의 표와 첨부된 주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최초 측정 범주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자산 집합의 각 구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측정 범주를 설명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46,354,386	46,354,386
장기금융예치금(*)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0,000	1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375,305,086	375,305,086
총 금융자산			421,669,472	421,669,47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상기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분류하였습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을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신용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보다 조기에 인식될 것입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기금융예치금, 매출채권및

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손실충당금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된 손상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2017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9개월 동안 인식된 매출채권손상차손 16,321천원을 포괄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에서 '수취채권손상차손'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손실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의 표시와 유사하게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 모형의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모형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변동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채택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아래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사는 손상을 포함한 분류 및 측정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소급적용되어 재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금융자산 분류를 위한 사업모형의 결정

㉡ 특정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및 이전 지정의 철회

㉢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특정 지분상품의 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당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

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 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정기적인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금액은 이동평균법(원·부재료 및 저장품), 총평균법(대형마트의 매장상품) 및 매출가격환원법(백화점의 매장상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 물	20~40년
구 축 물	20년
인 테 리 어	5년
공기구비품	5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시설이용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

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 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

하고 있습니다.

(11) 비과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과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

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 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 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으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충성제도

당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고객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물건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한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중 보상점수의 부여로 인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재무제표상 매출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③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수수료수익

당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인 특정매입상품총매출액에서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과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

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5에서 기술한 대로, 당사에는 백화점 부문 및 마트 부문의 2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당사의 전략적 영업단위들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0)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 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5,000 이하)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 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 및 관련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동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당사는 동기준서의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식	1964.10.26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김형균	1953.08.18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길환	1956.04.15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한장희	1956.09.02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4)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정식	(주)신세계 지원본부장	- (주)신세계 MD2담당 상무보 (2011) - (주)신세계 인사담당 상무 (2012)	없음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주)신세계 본점장 상무 (2014) - 現 (주)신세계 지원본부장	
김형균	청솔회계사무소 대표	- 서울청 영등포세무서 서장 (2008) - 제44대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2011) - 現 청솔회계사무소 대표	없음
위길환	-	- 광주시 문화체육정책 실장(2007) - 광주시 도시철도건설 본부장(2008) - 광주시의회 사무처 처장(2015)	없음
한장희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한국소비문화학회 공동회장(2007) - 한국유통학회 회장(2008)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2010) -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민간위원회 위원장 (2017) - 現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형균	1953.08.18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위길환	1956.04.15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한장희	1956.09.02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형균	청솔회계사무소 대표	- 서울청 영등포세무서 서장 (2008) - 제44대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2011) - 現 청솔회계사무소 대표	없음
위길환	-	- 광주시 문화체육정책 실장(2007) - 광주시 도시철도건설 본부장(2008) - 광주시의회 사무처 처장(2015)	없음
한장희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한국소비문화학회 공동회장(2007) - 한국유통학회 회장(2008)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2010) -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민간위원회 위원장 (2017) - 現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4.(생략) 25.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4.(현행과 동일) 25.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26. 전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제 8조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	제 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
제 12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본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리사무 등의 범위는 이사회에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좌 동> ② <좌 동>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 동>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 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 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본 회사가 책임	제 13조 <삭 제>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지지 아니한다.		
제 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본 회사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 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좌 동> ③ (좌 동)	①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식 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 15 조 (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사채의 발행) ① (좌동) ② (좌동) ③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
제 33 조 (이사회에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사회에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 소집권자로 한다.	제 33 조 (이사회에의 구성과 소집) ①(좌동)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간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좌동)	상법 제390조를 반영하여 이사회 소집일정 변경
38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8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④<좌 동> ⑤<좌 동>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좌 동> ⑧<좌 동>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⑧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장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2 개정 내용은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6(3)	6(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5억 원	15억 원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2019년 3월 19일 0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19년 3월 9일 ~ 2019년 3월 18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